



터키
Korea Desk 뉴스레터
2017 - Q4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어가고, 유난히 고온현상을 보였던 터키 날씨도 잊아지는 비소식과 함께 겨울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터키라는 나라에도, 터키의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고대합니다.

코리아 데스크 뉴스레터는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터키의 회계, 세법,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터키 세법 개정사항
- 감사보고서 개정사항

아무쪼록 이 뉴스레터가 귀사의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대해 당부해주실 사항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저마시고 KPMG 코리아 데스크에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urat Palaoğlu

파트너, Korea Desk Leader

KPMG Turkey

이종상

이사, Korea Desk Director

KPMG Turkey

1. 최근 터키 세법 개정 사항

1.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에 대한 이종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약 상대국의 거주자(터키입장에선 비거주자)가 터키 내에서 전문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된 이종과세방지협정 개정이 2017년 9월 26일에 공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터키에서의 서비스 제공기간이 6개월 또는 183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인원수에 상관없이 터키에서의 서비스 제공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기준에는 여러명이 동일한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제공기일에 인원수만큼을 곱하여 산정하였음)
2. 전문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공휴일이나 휴일 등을 제외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터키에 체류하는 모든 기일을 183일 산정 시 산입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미만 체류한 날도 하루로 간주합니다.
3. 비거주자가 터키에서 전문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으나 해당 수익이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닌 경우, 수익자는 보도자료에 첨부된 양식1번을 작성하여 서비스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터키업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대금을 지불하기 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는 보도자료에 첨부된 양식 2번을 작성하여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만약 서비스 시작시점에 해당 서비스 제공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터키에서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서비스 대가는 원천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6. 비거주자의 수익이 터키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세금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요청을 위해서는 체류확인증과 보도자료에 첨부된 양식 3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건설작업에 대한 부가세 원천징수율 인상

2017년 10월부터 법정 발주자(은행,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작업에 적용되는 부가세 원천징수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됩니다.

3. 납세자에 대한 소명 요청

터키의 소명요청 프로세스는 2016년에 제정되었고, 2017년 9월에 공표되면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한 소명요청 대상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한도를 초과하여 비용공제(기부금 등)를 신고한 납세자
- 배당금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 세무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공제한 납세자
- 관계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
- 부동산 또는 관계사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 75% 비과세 혜택을 받은 납세자
- 주주대여금이 있으나 관련 이자를 징수하지 않은 납세자

소명요청을 받은 납세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명평가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명평가기관이 해당 소명을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납세자는 추가적인 요청이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 소명평가기관이 해당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탈세의 징후가 있다고 인지한다면, 해당 납세자는 특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정신고 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 등) 납세자가 특정조치를 취하면, 납세자는 벌과금(penalty)를 납부하도록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 소명요청받은 납세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4. 법인세율 인상

2017년 12월 5일에 공표된 법인세법 개정에 의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법인세율이 22%로 확정되었습니다.(2017년 현재 법인세율은 20%임) 다만 각료회의의 의결을 통해 법인세율을 20%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감사보고서 개정사항

새로운 감사보고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 이하 위원회)는 5년간의 프로젝트 끝에, 새로운 형식의 감사보고서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감사기준 개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새롭게 변경된 감사기준을 통해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중점감사항목은 감사수행시 감사인이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합니다. 중점감사항목의 기술은 감사위원회, 재무정보이용자 및 감사인 모두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터키의 회계감독국은 개정된 국제감사기준의 터키 버전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재내용이 크게 늘어난 새로운 감사보고서(long form report)는 터키 내 모든 상장회사 및 공공회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영향

새로운 개정사항으로 인해 감사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나, 주주 또는 투자자 및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게도 작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우, 기존에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는 투자회사에 대한 평가, 비교대상 회사에 대한 평가 및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의 경우, 종전과 대비하여 감사인과 보다 활발하게 협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감사에 개입하게 됩니다.

Contacts



Murat Palaoğlu

Korea Desk Leader, Partner
E : mpalaoglu@kpmg.com
T : +90 (212) 316 6000 Ext: 6162



JS(JongSang) Lee

Korea Desk, Director
E : jongsanglee1@Kpmg.Com
T : +90 (212) 316 6000 Ext: 6477
M : +90 (535) 366 52 28

İstanbul

İş Kuleleri Kule 3 Kat 2-9
34330 Levent İstanbul
T : +90 212 316 6000

Ankara

The Paragon İş Merkezi Kızılırmak Mah.
Ufuk Üniversitesi Cad. 1445 Sok. No:2
Kat:13 Çukurambar 06550 Ankara
T: +90 312 491 7231

İzmir

Heris Tower, Akdeniz Mah. Şehit Fethi Bey
Cad. No:55 Kat:21 Alsancak 35210 İzmir
T: +90 232 464 2045

kpmg.com.tr
kpmgvergi.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7 KPMG Bağımsız Denetim ve SMMM AS., a Turkish corporation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Turkey.

The KPMG brand and KPMG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